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파산선고 등에 다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73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 론	2
2. 개별법률 검토	5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5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8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만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9. 23.

다. 회 부 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 론

□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따른 자격취득·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32조의2¹⁾에서는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는 없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사유 없이 단지 파산 중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반면 현행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거래상의 신뢰나 재정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임용, 자격, 인허가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파산의 경우 여타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현행 채무조정제도>

구 분	개 인 파 산	개 인 회 생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운 영 주 체	법 원		신용회복위원회		
대 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 이하
대 상 채 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 포함)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변 제 기 간	-	3~5년	10년 이내 (담보 35년)	10년 이내 (담보 35년)	10년 이내
채 무 감 면	재산차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이자채권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단, 카드10%)
법 적 효 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업무 수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경제 참여를 제한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

지와도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삭제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마다 해당 임용, 자격 또는 인허가가 가지는 공공성, 신뢰성이 높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 등의 정도가 다르므로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개별법률 검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
하려는 것임(제2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7조(가맹거래사) ① (생략)	제27조(가맹거래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도록 규
정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맹거래사의 결격사
유에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자문하는 등 높은 중립성이 요구되며, 현행법은 가맹거래사의 중립성을 전제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계약 체결 숙고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의 혜택도 제공²⁾하고 있음.

○ 또한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 진술 등의 업무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러한 가맹거래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무, 허위보고 금지의무 등을 규정³⁾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2)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①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정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그 개인
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제14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생략)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라. (생략)	1. ----- -----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라.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다단계판매업의 운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5억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파산선고 받은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임.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제4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8. (생략) ② ③ (생략)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 8.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 채무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각종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정적인 곤란으로 사업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가 각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회를 통해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정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0조제1호다목)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0조(결격사유)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 나. (생략) <u>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라. ~ 바. (생략)	1.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u><삭 제></u> 라.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 보이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는 용역·재화의 제공 요건인 장래 등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입자가 할부금을 납입하게 되고, 납입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 분야에 비해 거래상 신용이 높게 요구되므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신뢰가 저하되어 해당 사업 분야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선수금 규모는 2024년 3월말 기준 9조 4,486억원, 총 가입자 수가 892만명에 이르고 있어 업체의 재정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파산자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5